

노동정책연구

연구논문

2021. 제21권 제4호 pp.33-61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1.21.4.002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장종익**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리랜서의 실태를 직업 선택의 자발성, 주 소득원 여부,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 1인 사업자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 프리랜서 시장의 불공정성,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에 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직업 종사자의 비중과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비중이 미국 및 서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를 순위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응답자,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프리랜서일수록 직업적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될수록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프리랜서, 직업 만족도, 자발적 선택, 순위 프로빗 모형

논문접수일: 2021년 8월 18일, 심사의뢰일: 2021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8일

* 이 논문의 초안은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년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학술대회와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비평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논평자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부교수(jijang5@hs.ac.kr)

I. 서론

디지털기술 및 네트워크/플랫폼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아웃소싱,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후 ‘특고’)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심의 노동·고용·복지정책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정흥준·장희은(2018)은 특고의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검토한 후에 전화 및 모바일을 통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특고의 규모가 166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특고의 규모 130만 명보다 증가한 것이며, 비임금노동자 중에서 번역가 등 종속성이 낮고 자영업자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새로운 유형 550,335명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준영 외(2019)는 최근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5세 이상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디지털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거리를 거래하는 광의의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를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하였는데, 플랫폼경제의 확산에 따라 이러한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 유튜버 등 문화·콘텐츠·미디어·관광·여가서비스 분야와 교육·컨설팅·연구 분야에서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나 특고도 아니고 플랫폼노동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새로운 프리랜서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승렬 외, 2018; 김준호 외, 2019).

이러한 비정형노동(non-standard worker)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자유로운 에이전시 모델(free agency model)’(Fraser and Gold, 2001; Kunda et al., 2002)과 임금노동자적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 즉 ‘한계형 모델(marginalization model)’(Smeaton, 2003)로 구분된다. 후자의 관점은 비정형노동자의 높은 사용자 종속성 및 높은 고용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사실상 임금노동자이기에 위장형(disguised) 프리랜서라고 규정하면서 전통적 고용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Smeaton, 2003; 이승렬 외, 2013). 반면에 자유로운 에이전시 모델의 관점에서는 일의 조직화방식 유연화와 직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측면

에서 전통적인 임금노동의 한계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노동·고용·복지정책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Fraser and Gold, 2001; 김수영 외, 2020).

그러나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 영역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Spreitzer et al., 2017; Manyika et al., 2016; 이승렬 외, 2019; 이승윤 외, 2020). 특히 맥킨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가 미국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22~27%를 차지하고 유럽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1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요 소득원 여부와 선택의 자발성 여부 등 두 가지 기준의 네 가지 조합으로 프리랜서의 유형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다(Manyika et al., 2016). 한국 소프트웨어 직종 노동시장을 분석한 이승렬 외(2019)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은 소수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진성 프리랜서와 다수의 파견형 프리랜서 및 비자발적 미숙련 프리랜서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터뷰 결과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플랫폼노동,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 프리랜서플랫폼노동의 사례를 분석한 이승윤 외(2020)는 플랫폼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 측면 등에서 플랫폼노동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 및 지원정책에의 적용도 유형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프리랜서 범주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하여 프리랜서들은 일에 대한 통제권 행사 여부, 프리랜서 직업의 전업 및 주요 소득원 여부, 그리고 자발적 선택 여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합이 가능한 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프리랜서 직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의 심각성 여부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리랜서 조직의 존재 여부 등 제도 및 조직환경적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20년에 실시된 경기도 프리랜서 1,170명에 대한 중

합적인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을 통하여 구명하고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II장에서는 프리랜서 직업을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 보유 여부, 주 소득원 여부, 그리고 프리랜서 직업의 자발적 선택 여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맥킨지 조사결과와 경기도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직업 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에 프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가설을 도출한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조사데이터의 특성과 계량분석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프리랜서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 만족도 관련 가설

통상적인 의미에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일을 단독 혹은 파트너와 함께 수행하고 그 일의 결과와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직업상의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Kitching and Smallbone, 2012: 76).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과 소득의 위험 측면에서 전통적인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프리랜서도 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 측면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일을 발주하는 업체 혹은 중개업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만 소득의 위험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프리랜서도 존재하며, 이들의 중간에 많은 스펙트럼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직업적 성격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일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 여부와 그 수준이다. 일감을 제공하는 곳으로부터 업무 방식, 업무 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임금노동자 수준에 해당하는,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에 프리랜서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 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프리랜서로 나뉘어 있다(Fraser and Gold, 2001; Muehlberger, 2007; 황준욱 외, 2009; Spreitzer et al., 2017).

2020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1,246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내가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대답한 프리랜서, 즉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프리랜서는 전체 응답자의 52.3%인 것으로 나타났다.¹⁾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프리랜서, 즉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프리랜서들은 전체 응답자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27.8%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프리랜서 사례의 경우에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프리랜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두 번째의 분류기준은 프리랜서 직업을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부업 차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통적 임금노동자나 전통적 자영업자와 달리 많은 프리랜서 직업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원자화된 업무 처리방식은 최근에 플랫폼기업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업은 전통적 임금노동자이거나 전통적 자영업자이지만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 없이 프리랜서 일 자체를 간헐적 혹은 부업 차원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22~27%는 1인 자영업, 프리랜서, 임시노동자 등 독립적인 일에 종사하는데, 이 중에서 54%가 보조소득원으로 프리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유럽연합 15개 국가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18~28%가 독립적인 일에 종사하는데, 이 중에서 58%가 보조소득원으로 프리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anyika et al., 2016).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이다. 프리랜서 직업을 주요

1) 이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 장을 참조.

2) 이러한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프리랜서의 유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맥킨지의 조사에서는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협의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임시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원으로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 소득원일지라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학업이나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소득원으로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요 소득원이건 부분 소득원이건 프리랜서 직업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전공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다양하다. 또한 보조 소득원으로 프리랜서 직업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주요 소득원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황준욱 외, 2009; 우미숙·장종익, 2018; 신태중 외, 2019; 장종익, 2019; 이병우 외, 2020; 이승윤 외, 2020).

프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는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구분(Short et al., 2010; 남정민·이환수, 2017)만큼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프리랜서 직업을 주요 소득원이든 부분 소득원이든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중은 전체 프리랜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에서 72%를 차지한 반면에 비자발적 선택의 비중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선택의 비중이 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자발성 및 주요 소득원 여부에 따른 프리랜서 직업유형의 주요 국가별 분포

(단위: %)

	자발적 선택		비자발적 선택		소계
	자유계약형 (주요소득원)	부분 소득형	임금노동자 선호형 (주요소득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보조소득형	
미국	32	40	14	14	100
영국	32	42	12	14	100
스웨덴	33	41	13	13	100
독일	29	42	11	19	100
프랑스	29	39	10	21	100
스페인	26	32	21	21	100

자료: Manyika et al.(2016).

〈표 2〉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한 경기도 프리랜서의 분류

(단위: 명, %)

	자발적 선택		비자발적 선택		소계
	자유계약형 (주요소득원)	부분 소득형	임금노동자 선호형 (주요소득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보조소득형	
경기도	533 (42.8)	115 (9.2)	501 (40.2)	97 (7.8)	1,246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앞에서 언급한 경기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자발성 여부 및 주요 소득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집약되어 있다. 조사에 응답한 1,246명의 프리랜서 중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의 비중은 83%이고, 보조 소득원인 경우는 17%로 맥킨지 조사의 경우에 비하여 주요 소득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랜서 선택의 자발성을 프리랜서 활동 시작 시점에서의 자발적 선택을 기준으로 보면 52%, 비자발적 선택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에서 자발적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며, 비자발적 선택이 높은 스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하였듯이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프리랜서와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프리랜서가 공존하고,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직업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와 부분 소득원 혹은 보조 소득원인 경우가 공존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프리랜서 설문조사통계는 맥킨지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프리랜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발적 선택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프리랜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①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② 학업이나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어서, ③ 미래의 안정적인 일을 위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발적 선택으로 분류하고, ④ 나의 전공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⑤ 직장에서 일하길 원하였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⑥ 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함, ⑦ 나(혹은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이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였음, ⑧ 구직과정 중 직장 취업 전 임시로 선택, ⑨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들의 주관적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만족도가 높으면 생산성도 높고 개인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udge et al., 2001; Judge and Watanabe, 1993). 영미권 연구문헌에서 프리랜서와 유사한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직업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적지 않다(Hundley, 2001; Bradley and Roberts, 2004; Millán et al., 2013). 주로 미국과 유럽의 가구조사 및 노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1인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임금노동자의 직업 만족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측면에 관한 직업 만족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하면 전통적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이 측면에서의 직업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Millán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김우영·김응규(2001)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직업 만족도가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1995년에도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임금노동자의 직업 만족도보다 높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서구의 프리랜서직업의 높은 자발적 선택 비율과 경기도 프리랜서직업의 낮은 자발적 선택 비율의 대조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경우가 서구에 비하여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전병유, 2003; 최문경·이명진, 2005). 프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관하여 최근 영국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자영업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프리랜서들의 만족도가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van der Zwan et al., 2020). 그리고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 비교분석에서는 프리랜서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가 인하우스 통역사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지은, 2017).

그러나 프리랜서를 자발적 선택형과 비자발적 선택형으로 나누어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의 설문조사데이터 분석결과

에 따르면, 자발적 선택형 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의 직업적 만족도가 가장 높고(6점 만점에 4.86), 그다음이 정규직 임금노동자(4.58)와 부분 소득형 프리랜서(4.59)이며, 비정규직 임금노동자(4.30)나 경제적 궁핍형 혹은 임금노동자 선호형 프리랜서(4.32) 등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프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리랜서의 일에 대한 높은 통제권과 프리랜서 직업의 자발적 선택이 프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프리랜서 직업을 주업이나 부업으로 선택한 경우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직업의 주 소득원 여부가 프리랜서 직업 만족도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직업에 대한 자발적 선택 여부 및 통제권과 관련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이 높은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로는 전통적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불안정성 문제이다. 거의 모든 프리랜서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소득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인데(OECD, 2018; 이승윤 외, 2019),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이러한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있다(장지연 외, 2017).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1인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도입되고 있다(이병우 외, 2020).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프리랜서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셋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 사회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리랜서 시장 및 직업을 둘러싼 제도적·조직적 환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이 높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1인 사업가로서 겪는 어려움이 큰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프리랜서는 1인 사업가로서 프로젝트의 수주 및 계약 협상 및 체결과정, 일의 수행과정, 프로젝트의 완성 후 대금결제 과정에서 큰 조직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낮은 협상력 및 정보력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다(황준욱 외, 2009; 이승렬 외, 2018; 이승렬 외, 2019; 오재호 외, 2019; 신태중 외, 2019). 그리고 이러한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리랜서들의 조직 혹은 네트워크가 발전해 왔는데, 이는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Van den Born and Van Witteloostuijn, 2013)에서부터 공동 비즈니스를 위한 협동조합(Jang, 2017; 장종익, 2019), 또는 협회(Jang, 2017) 등의 조직형태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가설 4 :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프리랜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1 : 1인 사업가로서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 혹은 네트워크가 있는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Ⅲ.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의 특성 및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실증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2020년 경기도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

시한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 조사는 2020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 거주자 혹은 주거래 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랜서에 대하여 정형화된 질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및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유효표본수는 1,246개인데 이 중 응답의 완성도가 높은 표본 1,170개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170명 프리랜서 표본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여자가 62.8%로 남자보다 많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원 졸업이 7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력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프리랜서 직업을 통하여 획득한 연간소득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 평균 2,8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프리랜서가 종사하는 업종은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14.6%), 영상·방송·광고·만화·게임(24.7%),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15.4%), 출판·언론·번역·작가·디자인(11.6%), 스포츠·관광·의료·보건 서비스(3.3%), IT개발서비스(6.2%)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4.2%를 차지한 기타에는 도·소매, 건축·건설, 운송·운수, 금융·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1,170명의 응답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유형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답변한 사람인데 이 유형을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금근로자’로 지칭한다. 둘째 유형은 ‘재화의 판매나 자산의 임대 등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의 일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 및 기타 수입을 얻는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곳으로부터 업무 방식, 업무 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 유형을 ‘1인 자영업자’로 지칭한다.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금근로자’ 유형의 프리랜서가 전체 응답자의 57%를 차지하였고, ‘1인 자영업자’ 유형의 프리랜서가 4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프리랜서는 40.8%이고,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프리랜서는 5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금근로자’ 유형의 프리랜서도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중은 57.2%에 달하였다(표 3 참조).

〈표 3〉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프리랜서 유형 분류 I		프리랜서 유형 분류 II		
		4대보험 가입이 안 된 임금근로자 유형	1인 자영업자 유형	프리랜서 일이 주요 소득원	프리랜서 일이 보조 소득원	
사례수	1,170 (100.0)	667 (57.0)	503 (43.0)	971 (83.0)	199 (17.0)	
일 자 리 수	1개 일자리 갖고 있음	40.8	42.8	38.1	52.3	0.0
	2개 일자리 갖고 있음	50.4	48.7	52.6	45.4	94.0
	3개 이상 일자리 갖고 있음	8.8	8.5	9.3	2.3	6.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또한 프리랜서 일이 주요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3%이고,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 일이 주요 소득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 일자리가 1개인 응답자는 52.3%이고 2개 이상의 일 자리를 지닌 경우도 47.7%에 달하였다(표 3 참조).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이 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기 직전의 일자리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41.9%였고, 임금노동자로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52.9%, 자영업자로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5.2%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프리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로 일한 비중이 52.2%이고, 3~10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로 일한 비중은 43.8%, 3년 미만인 사람은 28.5%인 것으로 볼 때, 프리랜서 경력이 짧은 응답자일수록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인 경우보다 임금노동자로 일한 경우가 높은 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를 통하여 최근에 기업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하여 프리랜서 직업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보조 소득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업이 임금노동자로 일한 비중이 69.3%로 나타나, 기업의 아웃소싱의 흐름을 다

〈표 4〉 처음 프리랜서로 일하기 직전 일자리의 유형 및 특징

(단위: 명, %)

	전 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업종								주요 소득원 여부	
		3년 미만	3~10년 미만	10년 이상	영상 방송 만화 게임 등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진	출판 언론 번역 작가 디자인	교육 컨설팅 연구 법률	스포츠 관광 의료 보건	IT개발 서비스	기타	주요 소득원	보조 소득원	
사례수	1,170	346	456	368	171	289	136	180	38	73	283	971	199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로	41.9	28.5	43.8	52.2	53.3	63.1	31.7	37.4	24.7	18.1	22.5	45.5	24.5	
임금근로자로 일함	52.9	67.8	50.8	41.4	44.1	32.4	64.7	55.8	71.0	78.3	66.3	49.5	69.3	
자영업자로 일함	5.2	3.8	5.3	6.4	2.6	4.4	3.6	6.8	4.3	3.6	11.2	5.0	6.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을 보면,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의 경우에는 첫 직업부터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의 비중이 63.1%로 프리랜서 직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관광·의료·보건 서비스와 IT개발서비스의 경우에도 첫 직업을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우가 각각 71.0%와 78.3%로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2. 계량분석방법 및 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채택한 계량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순위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이다(Millán et al., 2013; 김우영·김응규, 2001). 종속변수로 사용된 프리랜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가장 낮은 1에서 가장 높은 5까지의 다섯 가지의 값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추정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Wooldridge, 2010).

$$\begin{aligned}
y &= 1 \text{ if } -\infty \leq y^* \leq \alpha_1, \Pr(y = 1 | X) = \Pr(X\beta + \epsilon \leq \alpha_1) = \Phi(\alpha_1 - X\beta) \\
y &= 2 \text{ if } \alpha_1 \leq y^* \leq \alpha_2 && \dots \\
y &= 3 \text{ if } \alpha_2 \leq y^* \leq \alpha_3 && \dots \\
y &= 4 \text{ if } \alpha_3 \leq y^* \leq \alpha_4 && \dots \\
y &= 5 \text{ if } \alpha_4 \leq y^* \leq \alpha_5, \Pr(y = 5 | X) = \Pr(X\beta + \epsilon \leq \alpha_5) = \Phi(\alpha_5 - X\beta)
\end{aligned}$$

설문조사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직업 만족도(y)는 관찰되지 않는 실제 만족도(y^*)의 서수적 수치이며, 이 서수적 수치와 실제 만족도의 관계는 위의 수식들 중에서 왼쪽 수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α_j 는 실제 만족도 y^* 의 구간 값이며, 추정모형은 오른쪽에 확률모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설명할 독립변수로는 i) 프리랜서 직업을 처음으로 선택할 때의 자발성 여부, ii)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 iii) 고용보험·산재보험 혹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프리랜서, iv) 불공정계약 정도에 대한 인식, v)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는 프리랜서 등 다섯 가지이다. 자신의 일에 관한 통제권 행사 수준 변수와 불공정계약 정도에 대한 인식변수를 제외한 세 가지 변수는 모두 이항변수이다(표 5 참조).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경기도 프리랜서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프리랜서 직업에 처음 진입할 때 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는 52%,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는 48%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프리랜서의 비중은 52.3%, 사용자 종속성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프리랜서의 비중은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예술활동증명제도 등 사회보험 및 기타 제도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응답 프리랜서의 51.1%를 차지한 반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40.9%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불공한 계약 관행이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전체의 18%이고, 어느 정도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47.2%,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34.8%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하는 업종에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리랜서 관련 조직(노동조합, 협회, 협동조합, 비공식임의단체, 기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6%

이고,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계량분석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프리랜서 경력, 프리랜서 소득수준, 가구원당 평균 가구소득수준, 프리랜서 소득이 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응답 프리랜서가 종사하는 업종의 유형, 일자리 수, 그리고 ‘4대 보험이 없는 임금노동자인 프리랜서’인가 여부도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추정모형에 사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기술통계표는 <표 5>와 <표 6>에 집약되어 있다.

<표 5>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표

변수		생성방법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프리랜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5	3.311	0.904	1	5
독립 변수	프리랜서 직업의 시작동기 중 자발적 선택형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학업이나,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어서/미래의 안정적인 일을 위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기 위해서)=1. (나의 전공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직장에서 일하길 원하였으나 일자리가 없어서/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함/나(혹은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이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였음/구직과정 중 직장 취업 전 임시로/기타)=0	0.521	0.500	0	1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	내가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3.444	1.093	1	5

〈표 5〉의 계속

변수		생성방법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독 립 변 수	고용보험, 산재보 험, 혹은 노란우 산공제에 가입된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에 한 곳 이상 가입한 응답자=1, 그렇지 않은 경우=0	0.254	0.435	0	1
	불공정계약 관행 에 대한 심각성 인식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불공정한 계약관행 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5	2.856	1.141	1	5
	애로요인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조 직이 있는 프리랜서	활동하는 업종에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리랜서 관련 조직 (노동조합, 협회, 협동조합, 비공식임의단 체, 기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 없거 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0	0.415	0.493	0	1

〈표 6〉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표

통제변수	생성방법 및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별	남성=1, 여성=0	0.381	0.486	0	1
연령	연령	39.1	10.354	19	81
교육수준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4년제대 졸=3, 대학원졸 이상=4	2.816	0.880	1	4
프리랜서 경력	개월 수	103.0	87.188	9	732
프리랜서 소득	2019년 연간 소득(만 원)	2033.7	2243.777	10	50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가구원=0	0.438	0.496	0	1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1,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2,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3,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4,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5, 5,000만 원 이상=6	3.959	1.578	1	6
가구원 수	명	2.901	1.256	1	7
프리랜서 소득이 본인 전체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	%	78.9	26.386	1	100

<표 6>의 계속

통제변수	생성방법 및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금노동자인 프리랜서’	(4대보험에 가입 안 된 임금근로자 중에서 프리랜서라고 답변한 사람)=1, (1인 자영업자 유형)=0	0.568	0.496	0	1
업종더미 1	(영상/방송/영화/광고/디자인)=1, 그 외=0	합계=171			
업종더미 2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1, 그 외=0	합계=289			
업종더미 3	(출판/언론/번역/작가/디자인)=1, 그 외=0	합계=136			
업종더미 4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1, 그 외=0	합계=180			
업종더미 5	(스포츠/관광/여가 서비스)=1, 그 외=0	합계=38			
업종더미 6	정보 통신(IT) 개발 서비스	합계=73			
업종더미 7*	기타	합계=283			
일자리수 더미 1	하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1, 그 외 = 0	합계=460			
일자리수 더미 2	두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1, 그 외=0	합계=604			
일자리수 더미 3*	세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1, 그 외=0	합계=106			

주: *는 기저변수로 모형의 추정에서 제외됨.

3.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추정모형 III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인데, 이 모형이 다른 대안적 모형에 비하여 Pseudo R2 값이 크고, LR 통계값도 크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네 가지 가설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프리랜서 경력, 소득, ‘4대 보험이 없는 임금노동자인 프리랜서’의 여부 등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추정모형 I은 추정모형 III에 비하여 LR 통계값이 현저히 낮으며, Pseudo R2 값도 낮아진다. 그리고 네 가지의 독립변수 중 사회보험 관련 변수, 계약의 불공정성 관련

변수, 그리고 프리랜서 애로요인 해결에 필요한 조직 관련 변수를 제외한 추정 모형 II도 추정모형 III에 비하여 모형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추정모형 III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지지). 즉,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응답자의 37.2%), “학업이나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11.8%), 그리고 “미래의 안정적인 일을 위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사람(3.0%) 등은 “나의 전공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28.3%), “직장에서 일하길 원하였으나 일자리가 없어서”(8.3%),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8.0%)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프리랜서(전체 응답자의 52.3%)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지지). 그리고 불공정계약 관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리랜서(47.2% = 어느 정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프리랜서의 비중)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지지). 1인 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프리랜서(전체 응답자의 37.1%)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가설 4-1 지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전체 응답자의 19.2%가 가입), 산재보험(12.4%), 노란우산공제(4.8%)에 가입한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가설은 10% 유의수준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지지).

통제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가구원당 가구소득으로, 이 값이 클수록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 개발 서비스와 교육, 컨설팅, 연구,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프리랜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성별(남성)	0.07844 (0.07263)	0.06626 (0.07422)	0.04563 (0.07483)
연령	-0.00531*** (0.00369)	-0.00928** (0.00367)	-0.00962** (0.00376)
교육수준	-0.00235 (0.03829)	0.00989 (0.03856)	0.02224 (0.03870)
프리랜서 경력	-0.00058 (0.00040)	-0.00013 (0.00040)	1.51E-05 (0.00041)
프리랜서 소득	1.14E-07 (5.63E-07)	-2.40E-08 (7.99E-07)	9.25E-08 (7.35E-07)
가구주 여부	0.019717 (0.07413)	0.04119 (0.07464)	0.02776 (0.07582)
가구소득/가구원 수	0.10406*** (0.03906)	0.09177** (0.03925)	0.10609** (0.04011)
프리랜서 소득/본인 전체 소득	0.00011 (0.00161)	-0.00033 (0.00163)	0.00074 (0.00166)
4대 보험이 없는 임금노동자인 프리랜서	-0.07475 (0.06309)	0.00837 (0.06419)	-0.00620 (0.06453)
업종더미 1 영상/방송/영화/광고/디자인	-0.12525 (0.10830)	-0.07703 (0.10991)	0.00803 (0.11129)
업종더미 2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	0.02747 (0.10068)	0.08945 (0.10101)	0.08773 (0.10013)
업종더미 3 출판/언론/번역/작가/디자인	0.25402** (0.11706)	0.17399 (0.11601)	0.23937** (0.11400)
업종더미 4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0.32465*** (0.10289)	0.24050** (0.10261)	0.17426* (0.10222)
업종더미 5 스포츠/관광/여가 서비스	0.20520 (0.19316)	0.05970 (0.19814)	0.01648 (0.19746)
업종더미 6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0.36012*** (0.12123)	0.37563*** (0.12511)	0.40657*** (0.13170)
일자리수 더미 1개	-0.22618* (0.12921)	-0.23138* (0.12844)	-0.23617* (0.13085)
일자리수 더미 2개	-0.09212 (0.11772)	-0.12921 (0.11580)	-0.14195 (0.11773)

〈표 7〉의 계속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프리랜서 직업의 시작동기 중 자유의지형			0.44322*** (0.06686)	0.38592*** (0.06796)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			0.23327*** (0.03393)	0.21949*** (0.03351)
고용보험, 산재보험, 혹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프리랜서				0.14067* (0.07734)
불공정계약 관행에 대한 심각성 인식				-0.26807*** (0.03597)
애로요인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는 프리랜서				0.18596*** (0.06885)
모형의 적합성	관측치 수	1,170	1,170	1,170
	Pseudo R2	0.0160	0.0559	0.0821
	LR 통계값	48.9	170.5	250.3
	Prob(LR 통계값)	0.0000	0.0000	0.0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p < 0.1$, ** $p < 0.05$, *** $p < 0.01$.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프리랜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프리랜서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와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기회형 1인 자영업자처럼 자신의 일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의 행사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에 전통적 1인 자영업자와 달리 부분적 소득원으로서의 직업적 위상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다. 부분적 소득원으로서의 프리랜서 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의 향상 및 평균 수명의 연장,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경향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고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전통적 임금노동자와 달리 소득의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적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소위 위장형 프리랜서 직업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제도적 보완과 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노동,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등 종속성이 높은 플랫폼노동 유형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중개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

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승윤 외, 2020; 남재욱, 2021)와 유사한 정책적 함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조직의 활성화 등 프리랜서 직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 그리고 프리랜서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전통적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 온 추세인 반면에 이러한 진성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1인 자영업 정책대상에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들은 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제도에서 소외되어 소득의 불안정성이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예술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자유계약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지속적인 직무훈련 기회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일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협업으로 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료 프리랜서를 확보하는 일,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협상, 결과 제출 후 대금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아 1인 사업자로서 어려움이 크다. 1인 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의 협업조직 및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작업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프리랜서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아직 프리랜서 직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신진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프리랜서들의 협업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신진 프리랜서의 참여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프리랜서 프로젝트 계약의 불공정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불공정계약 관행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기도 프리랜서들은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하였다. 민간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프리랜서들의 53.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공공기관과 주로 거래하는 프리랜서들의 4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이병우 외, 2020).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도급계약의 불공정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프리랜서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용역계약 거래에서 프리랜서의 사전적·사후적 교섭의 불리함과 부당한 대우를 줄일 수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 및 처리와 법률상담기능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개인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가 아니라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법인이 되면 프리랜서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분업을 통하여 일감수주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프리랜서들의 조직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기술적 요인, 시장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프리랜서 직업형태의 다양성을 1,170명에 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문헌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실제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특징은 일에 대한 통제권 행사 여부, 프리랜서 직업의 전업 및 주요 소득원 여부, 그리고 자발적 선택 여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주요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미국의 프리랜서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평균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의 프리랜서들은 보조 소득원으로서 프

리랜서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에 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프리랜서들 중에서 부분 소득형 혹은 보조 소득형 프리랜서의 비중은 1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프리랜서들의 70% 이상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반면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프리랜서들의 48%는 비자발적인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자발적 선택 비중이 42%에 달한 스페인의 프리랜서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랜서 직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의 심각성 여부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리랜서 조직의 존재 여부 등 제도 및 조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리랜서들의 주관적인 직업 만족도에 관한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프리랜서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공정계약 관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프리랜서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가설은 10% 유의수준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 소득원으로서 프리랜서 일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 중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도 낮고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으며, 소득의 위험이 높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소득의 위험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위장형 프리랜서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여 통제권의 양도와

위험의 이전 대 통제권의 확보와 위험의 부담이라고 하는 공정한 직업적 선택지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 소득원이나 보조 소득원으로서 프리랜서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프리랜서가 자신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포스트 포드주의의 일자리와 일의 분리(dejobbing)시대(Bruni and Zamagni, 2004)에 미래의 경제주체들이 프리랜서 직업형태를 자신의 선호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조직적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프리랜서 직업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실증적 확인을 통하여 프리랜서에 관한 기존 이론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에 환경경기도 설문조사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프리랜서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직업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프리랜서 직업을 부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주 소득원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리랜서를 고숙련·고지식·고소득의 자유로운 에이전시 모델과 저숙련·저지식·저소득의 한계 모델로 구분하는 프리랜서 직업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프리랜서 직업 형태의 다양성과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의 결과는 프리랜서의 실제 모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서유럽에 비하여 프리랜서 직업의 자발적 선택 비중이 왜 낮은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적 자영업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프리랜서의 직업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발적 선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 비중이 낮다는 것은 프리랜서 직업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프리랜서 직업을 유지하는 한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효능감을 높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리적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프리랜서의 특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직업형태의 특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관점에서 프리랜서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균형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영·하은솔·김영(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 (1) : 89~127.
- 김우영·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 (3) : 29~54.
- 김준영·권혜자·최기성·연보라·박비곤(2019).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고용정보원.
- 김준호·권상화·박순영·김소예·유은지·신지원(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콘텐츠진흥원.
- 남재욱(202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2) : 101~133.
- 남정민·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 (6) : 111~122.
- 신태중·이주환·이종수(2019).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노동실태와 권익 개선방안」 제19회 노동권익포럼, 2019. 11. 28. 서울노동권익센터.
- 오재호·이상훈·천영석·박누리·김강호·이하은(2019).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 경기연구원.
- 우미숙·장종익(2018).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 『한국협동조합연구』 36 (1) : 1~19.
- 이병우·장종익·김혜원(2020).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도·패턴웍스.

- 이승렬 · 김삼수 · 황준욱 · 박명준 · 신현구(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 이용관 · 이상규(201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 :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 권현지 · 김연철 · 노성철(2019).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I) :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 · 박경진 · 김규혜(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 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 181~239.
- 이승윤 · 백승호 · 남재욱(2020).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 제의 부정합」. 『산업노동연구』 26 (2) : 77~135.
- 이지은(2017).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 (3) : 85~109.
- 장종익(2019).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노동정책연구』 19 (1) : 29~58.
- 장지연 · 김근주 · 박은정 · 이승윤 · 이철승 · 정슬기(201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 (3) : 149~179.
- 정홍준 · 장희은(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문경 · 이명진(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 (1) : 21~51.
- 황준욱 · 권현지 · 김영미 · 박제성 · 남재량(2009).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 영화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Bradley, D. E. and J. A. Roberts(2004). “Self-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 Investigating the Role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Senior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 (1) : 37~58.
- Bruni, L. and S. Zamagni(2004). *Economia Civile : Efficienza, Equità, Felicità*

- Pubblica*. Bologna : Il mulino. (제현주 역,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2015, 북돋음)
- Fraser, J. and M. Gold(2001). “Portfolio Workers’ : Autonomy and Control Amongst Freelance Translators”. *Work Employment & Society* 15 (4) : 679~697.
- Hundley, G.(2001). “Why and When are the Self-Employed More Satisfied with Their Work?.” *Industrial Relations :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0 (2) : 293~316.
- Jang, J.(2017). “The Emergence of Freelancer Cooperatives in South Korea.”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8 (1) : 75~89.
- Judge, T. A., C. J. Thoresen, J. E. Bono and G. K. Patton(2001). “The Job Satisfaction-Job Performance Relationship :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7 (3) : 376~407.
- Judge, T. A. and S. Watanabe(1993).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6) : 939~948.
- Kitching, J. and D. Smallbone(2012). “Are Freelancers a Neglected Form of Small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 (1) : 74~91.
- Kunda, G., S. Barley and J. Evans(2002). “Why Do Contractors Contract? The Experience of Highly Skilled Technical Professionals in a Contingent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5 (2) : 234~261.
- Manyika, J., S. Lund, J. Bughin, K. Robinson, J. Mischke and D. Mahajan (2016). “Independent Work :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pp.1~16.
- Millán, J. M., J. Hessels, R. Thurik and R. Aguado(2013).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 A European Comparison of Self-employed and Paid Employees”. *Small Business Economics* 40 (3) : 651~670.
- Muehlberger, U.(2007). “Hierarchical Forms of Outsourcing and the Creation of

- Dependency”. *Organization Studies* 28 (5) : 709~727.
- OECD(201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Paris : OECD Publishing.
- Short, J. C., D. J. Ketchen, Jr., C. L. Shook and D. R. Ireland(2010). “The Concept of Opportunity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 Past Accomplishment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36 (1) : 40~65.
- Smeaton, D.(2003). “Self-employed Workers : Calling the Shots or Hesitant Independents? A Consideration of the Trends”. *Work, Employment & Society* 17 (2) : 379~391.
- Spreitzer, G. M., L. Cameron and L. Garrett(2017).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 Two Images of the New World of Work”.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 473~499.
- Van den Born, A. and A. Van Witteloostuijn(2013). “Drivers of Freelance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 (1) : 24~46.
- van der Zwan, P., J. Hessels and M. Burger(2020). “Happy Free Willie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lancing and Subjective Well-being.” *Small Business Economics* 55 (2) : 475~491.
- Wooldridge, J. M.(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Freelancers' Job Satisfac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ang, Jongick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ituation of freelancers in Korea in five aspects, such as spontaneity in choosing a job, whether it is a major source of income, control over one's own work, an organization to solve difficulties as a single entrepreneur, unfairness in the freelance market, and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survey data on freelancers in Gyeonggi-do in 2020,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s of involuntary freelancers and of freelancers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freelancers in Korea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job satisfaction of freelancers using the ordered probit model,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respondents who voluntarily chose a freelance job, freelancers who control their own work, and organizations necessary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reelancers are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while the job satisfaction of freelancers not enrolled in social insurance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of freelancers who strongly perceived that unfair contract practices in the freelancer market would b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Keywords : freelancer, job satisfaction, voluntary choice, ordered probit model